

2019 정책Brief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

※ 본 정책브리프는 '전라북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 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연구진

이주연_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경옥_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지훈_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2019 POLICY BRIEF

전북연구원 정책Brief

2019. 08. 12 vol.33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

CONTENTS

01 가정위탁보호의 중요성	01
02 가정위탁보호의 이해	02
03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03
04 가정위탁보호의 주요 쟁점	08
05 정책적 함의와 과제	09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가정위탁보호의 중요성

- ◎ 부모의 이혼, 학대(유기, 방임), 사망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 지속 발생
 - 전북의 아동 천 명당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은 1.12%(전체 아동 287,479명 중 요보호아동 321명)로 전년(0.88%)보다 0.24%p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0.48%) 보다 0.64%p 높음¹⁾
 -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이유는 아동 학대(43.6%)와 부모 이혼(20.6%)에 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는 시설보호²⁾ 62.5%, 가정보호³⁾ 37.5%로 가정보호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가정보호 중에서도 가정위탁보호는 63.8%로 큰 비중을 차지함³⁾
 - 부모에 의한 친가정 내 아동 양육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보호를 주요 보호법으로 전개해 왔지만, 2000년부터 UN아동권리위원회의 반복적 권고와 시설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가정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해 가정위탁보호를 확대·강화하려고 함
 -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는 시설보호 71.3%(229명), 가정보호 28.7%(92명)로 시설보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가정보호 중 가정위탁보호 비율은 93.5%(86명)로 가정보호의 대부분을 차지함
- ◎ 가정위탁보호는 요보호아동을 친가정과 비슷한 위탁 가정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친부모와 재결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가족 해체 방지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함
 - (UN아동권리협약 제7조 1항/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은 친부모에 의해 보호받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가능한 친부모와 자녀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 시설보호의 문제점 해결, 아동의 권리·인권존중·안전과 보호, 건강한 성장 발달 및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의 중요성과 우선 시해야 됨이 강조되고 있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조치 중 시설보호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 심각. 아동의 권리와 인권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하는 가정위탁보호를 우

1) 요보호아동발생현황보고서, 2018

2) 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3) 가정보호 : 가정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장 등

선행해야 한다는 필요성 강조

-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성장 발달과 더불어 친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됨

2. 가정위탁보호의 이해

◎ 개념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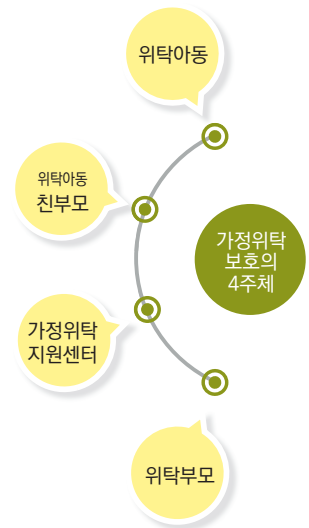
- (개념) 부모의 학대·방임, 이혼, 사망, 질병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녀를 일시적·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적합한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위탁가정 내에서 건전하게 보호·양육·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목적) 일차적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위탁 양육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이 해결되는 대로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것

◎ 가정위탁보호의 3가지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제3자)에 의한 양육
- 그 외 2세 이하 아동 및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보호와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가정위탁보호가 있음

◎ 가정위탁보호 지원 대상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만 18세 미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표 1〉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및 위탁가정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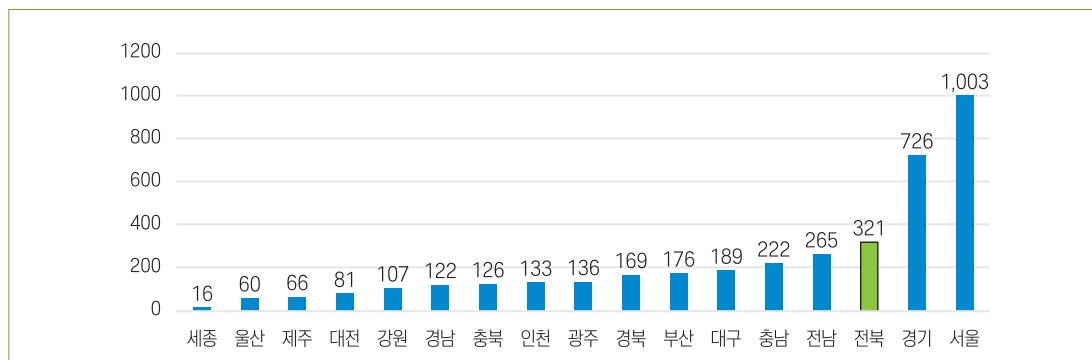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지원 대상 아동	일반아동	부모의 이혼, 가출, 질병, 실직, 사망, 수감 등으로 인해 가족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일정 기간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 및 학대피해 아동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나 일시보호 중인 아동, 부모의 학대로 친부모와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가정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 수준이 있는 가정 · 종교의 자유 인정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양육이 가능한 가정 ·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60세 미만의 나이 격차가 있어야 함 ·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의 자녀이어야 함 (18세 이상 자녀는 제외) ·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 폭력, 정신 질환 등의 전력이 가정 내에 없어야 함

- (만 18세 이상 아동 중 보호연장 가능 아동) ① 대학 진학 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 동안 연장, ③ 만 20세 미만까지(등록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연장, ④ 만 25세 미만까지(아동의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보호 기간 연장 요청하는 경우) 연장, ⑤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아동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만 25세 미만까지 연장, ⑥ 만 18세 도달 시점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 기간 연장 가능함

3. 가정위탁보호의 전복 현황

◎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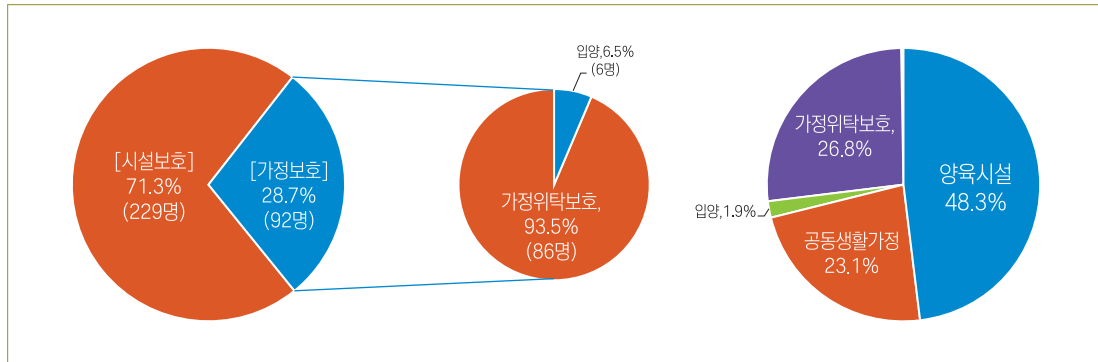
- 전국 요보호아동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3,918명 중 서울이 1,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726명), 전북(321명), 전남(26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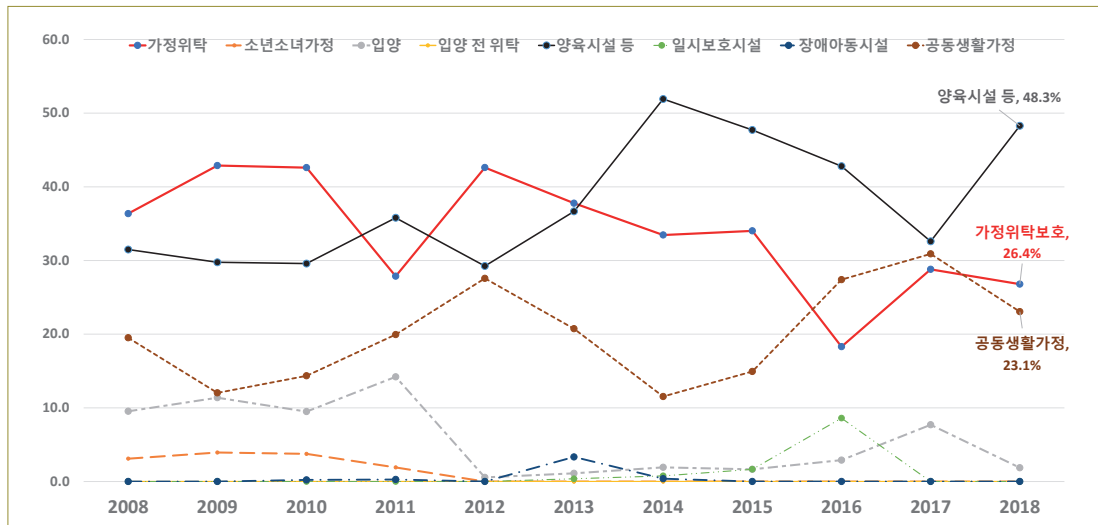
4) 2018 요보호아동 현황(2019. 5. 31기준)

-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를 보면, 시설보호 71.3%, 가정보호 28.7% 이었음
 - 시설 및 가정보호 조치를 통합한 전체 보호조치 중 가정위탁보호비율은 26.8%를 차지함



〈그림 2〉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2018)

-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추이를 보면, 2013년까지는 가정위탁보호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14년부터는 양육 시설 보호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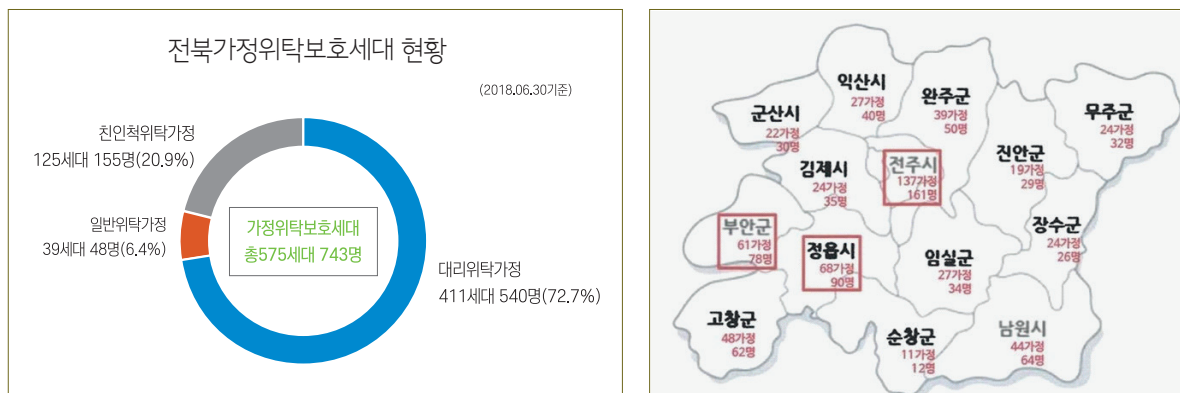
〈그림 3〉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추이와 내용(2008~2018)

◎ 가정위탁보호 현황⁵⁾

-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2018년 6월 기준 총 575세대이며, 위탁받고 있는 아동은 743명 (남 383명(52%), 여 360명(48%)임

5)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 자료(2018. 6. 30기준).

- 유형별로 일반위탁가정 6.46%(39가구, 아동 48명), 대리양육위탁가정 72.67%(411가구, 아동 540명), 친인척위탁가정 20.86%(125가구, 아동 155명)임
- 지역별로는 전주 137가구(아동 161명), 정읍 68가구(아동 90명), 부안 61가구(아동 78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전북 위탁가정 유형별 가구 및 아동 수 현황

- 일반위탁가정 총 39가구(48명) 중, 전주 18가구(19명), 익산 3가구(7명), 임실 3가구(6명), 진안 3가구(4명), 남원 3가구(3명) 등으로 나타남

〈표 2〉 전북 시군별 일반위탁가정 가구 및 아동 수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가구수	18	1	3	2	3	1	3	3	-	1	3	-	1	-	39
아동수	19	1	7	2	3	1	3	4	-	1	6	-	1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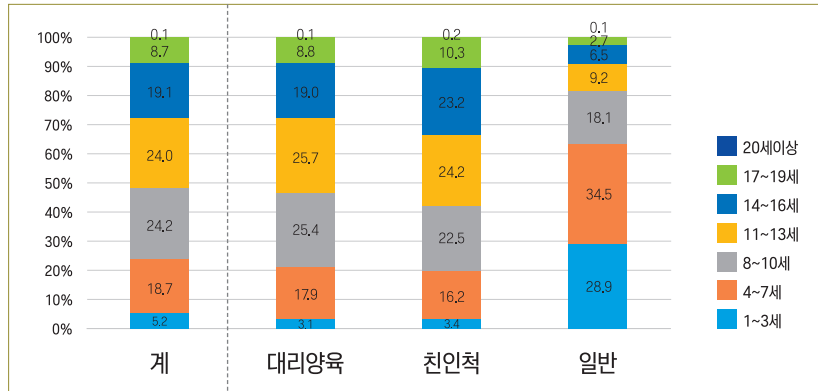
- (위탁아동 특성) 17~19세가 254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180명(24.2%), 14~16세 128명(17.2%) 등으로 나타남. 17~19세는 남아 비율이, 20세 이상에서는 여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 전북 위탁아동의 연령 및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계	743	3(0.4)	32(4.3)	62(8.3)	84(11.3)	128(17.2)	254(34.2)	180(24.2)
남	383	1(0.3)	19(5.0)	33(8.6)	50(13.1)	70(18.3)	146(38.1)	64(16.7)
여	360	2(0.6)	13(3.6)	29(8.1)	34(9.4)	58(16.1)	108(30.0)	116(32.2)

- 위탁 유형별로 '대리양육'의 경우 8세~13세(51.1%) 비율이 높고, '친인척'의 경우 11세~16세(47.4%), '일반'은 1세~7세(63.4%) 비율이 높게 나타남.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아동은 연령 분포가 유사했지만, '일반' 위탁아동은 1세~7세(취학 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5〉 전북 위탁가정 유형별 가구 및 아동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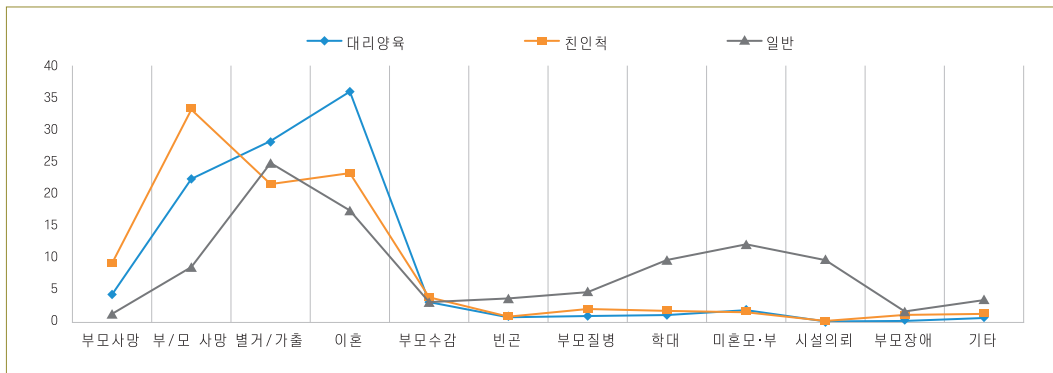
- (위탁 사유) 위탁 사유는 부모 이혼이 42.8%(318명)로 가장 많고, 부모의 별거·가출 22.7%(169명), 부 또는 모 사망 19.9%(148명) 순으로 나타남

〈표 4〉 전북 위탁아동의 위탁 사유

(단위: 명, %)

합계	이혼	별거 가출	부/모 사망	부모 사망	부모 수감	학대 방임	미혼모 (부)	부모 장애	부모 질병	시설 의뢰	빈곤	기타
743	318	169	148	22	21	14	12	10	7	4	2	16
100.0	42.8	22.7	19.9	3.0	2.8	1.9	1.6	1.3	0.9	0.5	0.3	2.2

- 유형별 위탁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위탁' 아동은 부모의 별거/가출이 24.9%(233명)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리양육위탁' 아동은 부모 이혼이 36.2%(2,847명), '친인척위탁' 아동은 부(모)의 사망이 33.4%(1,034명)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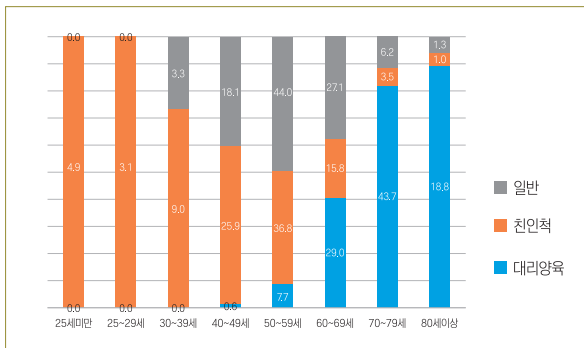


〈그림 6〉 유형별 위탁아동의 위탁 사유(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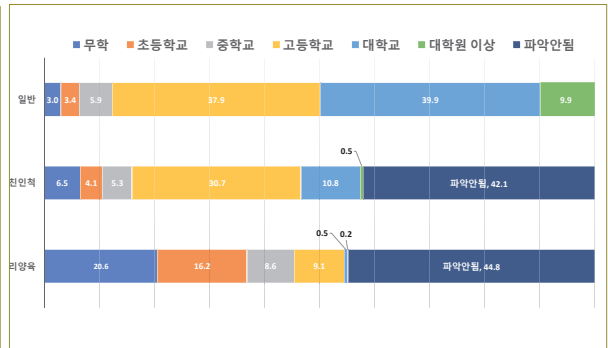
- (위탁 부모의 연령) 유형별로 보면 '대리양육' 위탁 부모는 주로 60~79세(72.7%), '친인척' 위탁 부모는 40~59세(62.7%), '일반' 위탁 부모는 50~69세(71.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즉 위탁 부모의 연령은 「친인척 < 일반 < 대리양육」 유형 순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위탁 부모의 학력 수준) ‘대리양육’ 위탁 부모는 무학(20.6%), 초등학교(16.2%) 순이었고, ‘친인척’ 위탁 부모는 고등학교(30.7%), 대학교(10.8%) 순이었으며, ‘일반’ 위탁 부모는 대학교(39.9%), 고등학교(37.9%) 순으로 일반위탁부모의 학력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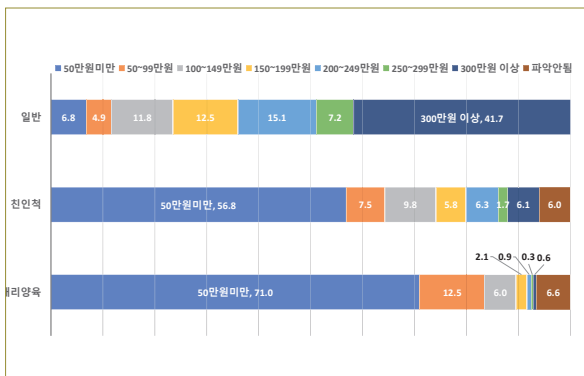


〈그림 7〉 유형별 위탁부모의 연령 분포(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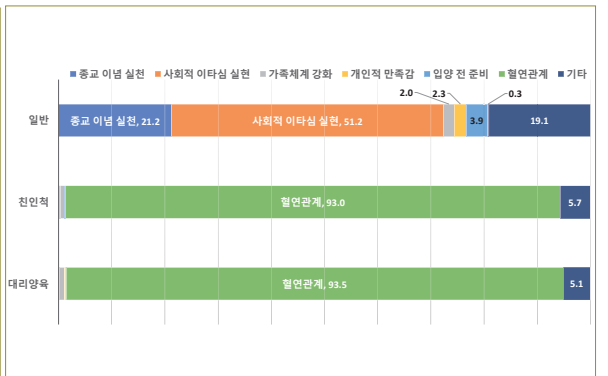


〈그림 8〉 유형별 위탁부모의 학력 분포(2017)

- (위탁 부모의 소득 수준)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50만원 미만(71.0%), 50~99만원(12.5%) 순이었고, ‘친인척’ 위탁가정은 50만원 미만(56.8%), 100~149만원(9.8%) 순이었으며, ‘일반’ 위탁 가정은 300만원 이상 41.7%로 나타나 「대리양육 < 친인척 < 일반」 순으로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위탁가정으로서의 참여 동기) 대리와 친인척 위탁가정은 당위적으로 “혈연관계” 이유가 각각 93.5%, 93.0%로 가장 높았고, ‘일반’ 위탁가정은 “사회적 이타심 실현(51.2%), 종교적 이념 실천(21.2%)” 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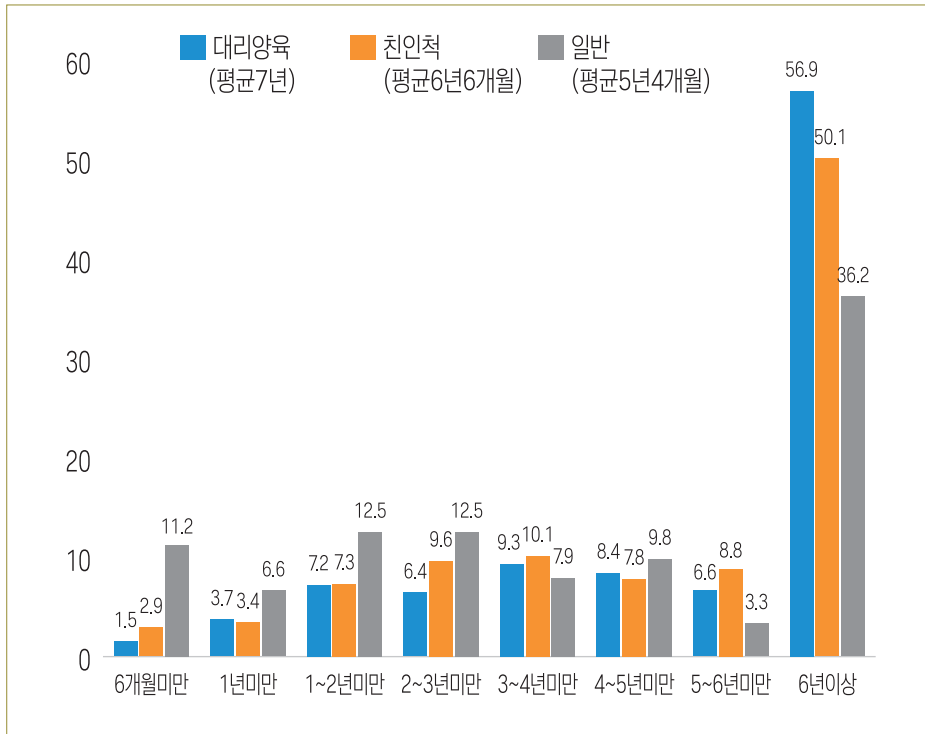


〈그림 9〉 유형별 위탁 부모의 소득 수준 분포(2017)



〈그림 10〉 유형별 위탁 부모의 참여 동기(2017)

- (평균 위탁 기간 및 위탁 종결 사유) 평균 위탁기간은 6년 9개월, 일반위탁은 5년 4개월, 대리양육 7년, 친인척 6년 6개월로 나타남 위탁 종결의 사유는 91.4%가 만 18세 도 래에 따른 자연 적 종결임. 이는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 목적인 친가정으로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을 보여줌



〈그림 11〉 평균 위탁기간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전북도내 요보호아동 발생 시 위탁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며, 전라북도로부터 지정받아 운영되는 아동복지전담기관 임
 - 운영 법인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17.1.1부터)이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음
 - 팀장과 상담원 5명, 자립전담요원 1명, 심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4. 가정위탁보호의 주요 쟁점

①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가정위탁보호사업이 도입 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무원, 교사, 일반 시민에게 생 소한 제도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함

② 가정위탁보호의 90% 이상이 친족 위탁(대리양육, 친인척)

- 전북지역 가정위탁보호는 대리양육 72.7%, 친인척 20.9%, 일반가정위탁 6. %로, 친족 위탁(대리양육, 친인척)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친족 위탁에 가정위탁보호를 의존하고 있음

③ 위탁 기간 장기화 및 (종결)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율 저조

- 아동의 위탁 사유는 부모의 이혼과 가출·별거, 부나 모의 사망 등 친부모의 방임 이었으며, 대부분은 만18세 이상 연령 도래에 따른 위탁보호 종결이었음
- 이에 가정위탁보호의 중요 목적인 친가정 및 친부모 지원을 통한 원가정 복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

④ 일반가정위탁보호의 부족 문제

- 일반가정위탁보호의 부족 문제는 첫째, 혈연관계 중심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둘째, 일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저조하여 일반위탁가구에 대한 수요 파악도 안 됨. 셋째, 일반가정위탁보호의 전반적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 부족과 정책 욕구 파악이 제한적이며, 일반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불충분함. 넷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및 공무원의 인력 구조가 매우 열악함

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전달 체계의 문제

-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조치 시, 행정기관과 지원센터의 업무 이원화로 연계 부족,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행정적 업무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보호조치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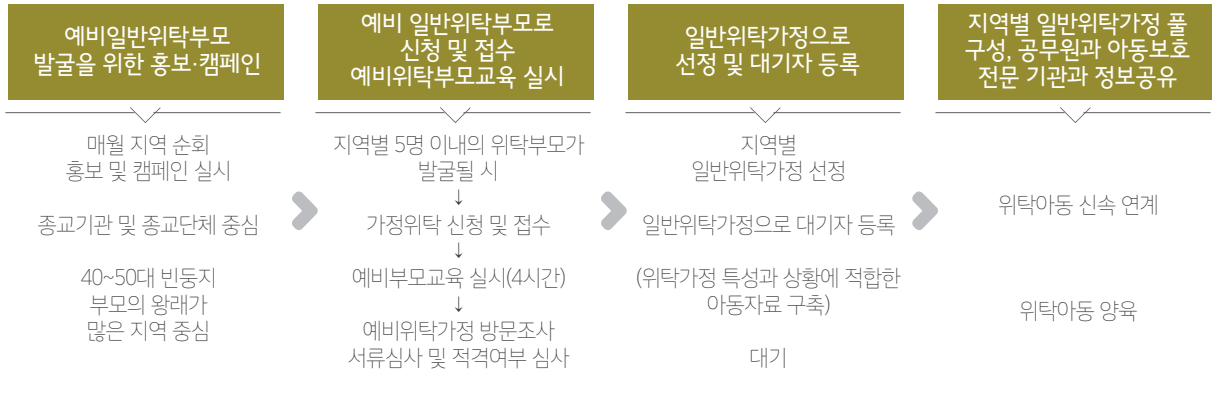
5. 정책적 함의와 과제

◎ 가정위탁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가정위탁보호가 도입 된지 15년이 흘렀음에도 공무원, 어린이집·학교 교사들도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더욱 생소하여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함
- 가정위탁보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1)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사업 이해 증진 교육 확대·교육 참여 의무화 (2)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3)일반 시민 대상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 확대 등 필요함

◎ 일반위탁가정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장 주요 업무는 일반가정위탁 발굴 및 양성과 활성화임
 - 대리·친인척가정위탁은 혈연관계로 어쩔 수 없이 아동을 양육·보호하지만, 일반가정위탁은 제3자가 종교적 이념과 사회적 이타심 실현으로 참여하기에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함
- 일반위탁가정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1)양육·보호함에 있어 위탁 부모에 대한 법적 권한 확대, 낮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 해소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2)요보호아동 보호조치는 관할 행정기관이 결정하기에 공무원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함. 즉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를 행정 업무가 쉽고 빠른 시설보호 보다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의거 가정위탁보호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행정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유기적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함. (3)지역별 일반위탁가정 풀(pool) 구축 및 공무원과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함



(그림 12) 일반위탁가정 발굴 및 지역별 풀 구축과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 공유 방안

◎ 양육비 지원 단계적 현실화 및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필요

- 위탁아동의 상급 학년 진학부터는 교육비(학비, 과외활동비, 교재비등), 의류비, 식비, 교통비, 용돈 등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양육비가 발생함
 - 특히 대리양육의 경우 조부모의 경제활동 부재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이에 가정위탁보호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 있음. 또한, 위탁아동의 연령과 필요 욕구에 따라 차등적 지원이 필요함.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적극 발굴·연계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다양한 지원 마련이 필요함

〈표 5〉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 금액과 위탁아동 연령대별 예상 지출 부분

구분		만 0~9세	만10세~12세	만13~15세	만16~18세
예상 수입	기초생활비	약 55만원	약 55만원	약 55만원	약 55만원
	양육보조금	20만원 10만원(양육수당)	20만원	20만원	20만원
	총액	8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예상 지출 부분	교육 및 생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국비 지원 혹은 가정 양육비 지원 만 7~9세, 학교 방과후수업 이용, 지역아동센터 이용 	과외활동비 (영어 및 예체능) 지역아동센터 이용	과외활동비 (국, 영, 수 등) 식비, 의류비 용돈(5만원)	과외활동비 (전과목, 인강) 의류비, 식비 교재비, 교통비 용돈(10만원)

주 : 2019년 1월 기준

◎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지원 특화 필요

- 가정위탁보호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이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남
- 대리양육은 조부모의 고령으로 학습·진로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했으며, 이에 군·읍·면 지역까지 직접 방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멘토(방문교사 등) 서비스가 필요함
- 친인척 양육은 위탁아동이 가정에 배치됨에 의해 가족원간의 갈등과 분쟁에 따른 스트레스와 초기 부적응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며, 이에 가족 관계 재구성과 초기 적응을 위해 위탁아동 배치와 더불어 전문 상담가의 가족 상담 의무화가 필요함
- 일반가정위탁은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 후 위탁 부모의 상실감, 우울감, 그리움에 대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 일반위탁부모 대상 심리 정서 치료 지원과 위탁아동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종결 조치,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등 요보호아동의 현재와 미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 각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 제정만 했을 뿐 그 중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실제 구성 및 운영되어 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보호 조치를 제대로 심의하고 그 역할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모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위탁아동 자립 준비 지원과 종료 아동 사후 관리 강화 및 통합적 사례 관리 필요

- 위탁아동의 위탁 사유는 대부분 부모 이혼이나 사망 및 가출, 연락 두절이었고, 종결 사유의 대부분은 만18세 연령 도래에 의해 위탁보호가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사유들은 위탁아동의 위탁 기간 장기화 및 친가정 복귀의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따라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자립 준비서비스 강화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함. 무엇보다 지역 사회 행정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전복형 사례 관리 매뉴얼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친가정 자립 능력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친부모의 양육 여건과 가정 환경을 회복시켜 아동을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일임
 -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 대부분은 위탁 부모와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어 위탁 기간의 장기화, 친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1)친부모와 위탁아동간의 지속적인 연계, (2)친가정이 아동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과 친부모가 자립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 및 지역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 지원 필요, (3) 친부모와 위탁 부모간의 중재자적 역할을 행함으로써 친부모와 위탁 부모간의 역할과 행동을 조정·관리해주고 위탁아동과 위탁 부모의 혼돈과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해주어야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 전북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가 14개 시·군의 위탁 부모 575명과 위탁아동 750명을 지원하고 있음

- 상담원 1명당 담당 사례가 200개 이상이며, 자립 지원 담당자 1명은 자립준비 아동에서부터 5년 이내의 종결 아동까지 약 1,000사례 이상을 관리하고 있음

- 이에 향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개소 수 확충, 홍보와 자립 지원 중심의 인력 증원, 그리고 상담원 증원으로 상담원 1인 당 적정 사례 수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질 높은 사례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 개입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함. 무엇보다 자립 지원 사업과 친가정 복귀 사업 및 일반위탁가정 발굴 등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역량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야 함

〈참고문헌〉

강현아, 정익중, 양경해(2015). 가정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장기적 발달성과: 일반위탁과 친족위탁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0호, 1-26.

최은희, 윤혜미. (2014). 학대피해경험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가정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복지학, (46), 143-170.

정익중, 강현아, 김주현, 박나래, 오세현(2017). 2017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세종시: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7).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서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책Brief

2019. 08. 12 vol.33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밭길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jthink.kr